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1호서식] <개정 2016. 6. 14.>

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	군별	군번
	성명	생년월일
	집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E-mail	
	주소	
편입처분 등	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	보충역 편입 당시 소속
	처분기관	
	보충역 편입 경위(약술)	
	그 밖의 참고사항	

「병역법」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(「군인사법」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합니다) 1부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병적증명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접 수	심 사	심사의결서 작성	결과 통보
신청인	국방부, 각 군 본부	국방부, 각 군 본부	국방부, 각 군 본부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